

제 1869 호  
1994. 12. 24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 
편집인 : 공보관 신동우  
전화 : 731-6111~3  
인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  
전화 : 273-8111~3

# 시보

차례

---

◎ 조례

제 3143 호 서울특별시 성수대교사고에 따른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..... 2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“서로서로 고통분담 고루고루 행복분담”

2031

## 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 따른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4. 12. 24

서울특별시장 최병렬◎

## ◎ 서울특별시조례 제3143호

##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 따른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수대교 붕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시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이 조례에서 "보상금"이라 함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외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말한다.

제3조(사상자의 범위 등) ①이 조례에서 "사상자"라 함은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속지분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
제4조(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한 사실조사, 기타 보상 등의 심의 결정을 위하여 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보상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·결정

2.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 결정
3. 기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

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채석위원과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과장과 도로시설과장이 된다.

제5조(보상금) ①보상금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유족대표와 합의된 특별위로금으로 한다.

1. 사망자는 1인당 70,000,000원을 지급 한다.

2. 부상자는 가족과 합의에 의하여 추후 장사가 정한다.

②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.

제6조(보상신청)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은 1995년 3월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 해외이주자·국외출타자·제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와 결정)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정서·총달) ①보상심의위원회가

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제9조(재심)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지급청구) ①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아니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환수) ①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사기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

2. 과오 지급 및 이중 지급한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한다.

제12조(공고)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시보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

2. 신청인 자격

3. 신청기간

4. 구비서류
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3조(기타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록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〈제안이유 및 주요골자〉

##### 1. 개정이유

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# 2. 주요골자

가. 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(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).

-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

나.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(안 제4조제2항).

- 사상자 심사결정 (지급신청일부터 30일이내)

- 보상금의 심의 결정

다. 보상금은 사망자 1인당 70,000천원, 부상자는 가족과 합의하여 추후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.

라. 보상신청기간 : 1995년 3월 30일까지 신청(안 제6조).

마. 보상금 지급청구 :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(안 제10조).